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법제처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 불합리한 법령의 상시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령정비국을 신설하면서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을 폐지하고, 법령정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 중 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자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밑에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 중 12명(4급 1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법제국 1개 법제관을 경제법제국 법제관으로 이관하고, 법령정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며, 기획조정관과 법제정보지원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15. ~ 4. 20.)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같다)”를 “같다), 법제자문(「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제정책국”을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국”으로,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를 “법령홍보”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관리
3.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5.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3.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송무업무의 수행
 16.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7. 보안에 관한 사항
 1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
습에 관한 사항
 19.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2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22.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2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24.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26. 통일 법제의 조사·연구
- 제7조제3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9.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 및 관리

10.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법령정비국) ① 법령정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등의 발굴 및 정비

4.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

5. 법령 용어·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 법령 용어·문장 순화 관련 조사 및 연구

7. 입법영향분석 및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

8.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9.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10.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 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 중 “6명”을 “5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명과 법제관 5명”을 “1명과 법제관 6명”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제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법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제도의 운영
4. 법령정보, 법령입안·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6. 처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리 및 운영
8. 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12.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14.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9명”을 “40명”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제4장(제1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한시조직

제18조(법제자문조정관) ① 처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둔다.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제자문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법제자문제도의 기획 및 운영
2. 법제자문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제공
3. 법제자문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4.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 계 “240”을 “2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9”를 “245”로 하

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4”를 “230”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은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5월 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별표 2]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1명
2. 법령정비국 2개 과	8명
3. 사회문화법제국 1개 법제관	1명
4. 법제정보지원국 1개 센터	1명

[별표 3]

법제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관련)

법제자문조정관(존속기한: 2029년 5월 5일)

총계	14
일반직 계	14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1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 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 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 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 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 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 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협 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 정보의 관리·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직무) ----- ----- ----- ----- ----- ----- ----- ----- <u>같다</u>), <u>법제자</u> <u>문(「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u> <u>조의2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u> <u>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제3조(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 영지원과, <u>법제정책국</u> , 행정법 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 제국, 법령해석국 및 <u>법제지원</u> <u>국</u> 을 둔다.	제3조(하부조직) ① ----- ----- <u>법제정책국, 법령정비</u> <u>국</u> ----- ----- <u>법제정보지</u> <u>원국</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대변인) ① (생 략)	제4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 여 처장을 보좌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u>	2. <u>법령홍보</u> -----

공보사무

3. ~ 6. (생 략)

제5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
과제의 총괄·관리

3.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
의 지원·총괄

5.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
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
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
검 및 관리

8.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
과 정원의 관리

9.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
·평가·활용 등 기록관의 운
영에 관한 사항

9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
과제의 총괄·관리

3.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
의 지원·총괄

5.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
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
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
검 및 관리

8.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
과 정원의 관리

9.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
·평가·활용 등 기록관의 운
영에 관한 사항

10.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한 사항

10.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2.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4. 송무업무의 수행
15.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 15의2. 보안에 관한 사항
- 15의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15의4.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 15의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17.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사항

11.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3.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송무업무의 수행
16.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7. 보안에 관한 사항
1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9.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2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22.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17의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
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운영

18. 법령정보, 법령입안·심사
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예
규 등의 전자적 구축·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
령연혁집의 편찬·정비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
축·유지 및 관리

21.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구축
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
보의 검토·분석

21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
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
항

21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
구계획의 수립

23.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4.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추진 및 외국법령의 우리말
번역

2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2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
구계획의 수립

24.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26. 통일 법제의 조사·연구

26. 통일 법제의 조사·연구

제7조(법제정책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

9.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신설>

11.·12. (생략)

<신설>

제7조(법제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9.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 및 관리

10.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11.·12.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법령정비국) ① 법령정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등

	<u>의 발굴 및 정비</u> <u>4.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u> <u>구축 및 입법지원</u> <u>5. 법령 용어·문장 순화 업무</u> <u>의 총괄 및 조정</u> <u>6. 법령 용어·문장 순화 관련</u> <u>조사 및 연구</u> <u>7. 입법영향분석 및 법령정비에</u> <u>대한 사후관리 등 법령 품질</u> <u>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u> <u>8. 입법영향분석의 실시</u> <u>9.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u> <u>선</u> <u>10.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u> <u>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u> <u>통보</u>
제8조(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 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u>6명</u> 을 둔다. ②·③ (생략)	제8조(행정법제국) ① ----- ----- ----- <u>5명</u> ----- -----.
제9조(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 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u>2명</u> 과 법제관 <u>5명</u> 을 둔다. ②·③ (생략)	제9조(경제법제국) ① ----- ----- ----- <u>1명</u> 과 법제관 <u>6명</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
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
관리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
선

5.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
안·심사

6.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
·연구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
사·연구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
법 지원

9.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운영

10.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

제12조(법제정보지원국) ① 법제
정보지원국-----.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법제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법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의 수립·시행

3.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제도의 운
영

4. 법령정보, 법령입안·심사자
료, 법령해석사례, 훈령·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6. 처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7.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리 및
운영

8. 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
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선 업무의 총괄·조정

11.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12. 훈령·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13. 정부 내 법령(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

14. 규제혁신·적극행정 등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10.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12.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14.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

은 3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
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
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
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 설>

<신 설>

-- 40명-----

-----.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평가대상 조직

제4장 한시조직

제18조(법제자문조정관) ① 처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
제1호에 따라 2029년 5월 5일까
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
자문조정관을 둔다.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한다.

③ 법제자문조정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법제자문제도의 기획 및 운

영

2. 법제자문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제공

3. 법제자문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4.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
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
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자문조
정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
조기관은 제5항에 따른 범위에
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40</u>	<u>246</u>	+6
•	•	•	
•	•	•	
일반직 계	<u>239</u>	<u>245</u>	+6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4</u>	<u>230</u>	+6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9